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정답 및 해설 64p 15번 작성방법 및 작성화면	해설		

수정 전

작성방법

- 음식업을 하는 법인 공제율은 6/106 적용한다.
- 농민으로부터의 매입은 제조업자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므로 음식업인 해당 사업자는 농어민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.

<의제매입세액 정산명세>

A. 한도액 200,000,000원 = 1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500,000,000원 × 한도율 40%

B. 당기매입액 216,000,000원 = 1기 예정 106,000,000원 + 1기 확정 110,000,000원

공제대상금액 200,000,000원 = MIN(한도액 200,000,000, 당기매입액 216,000,000)

C. 공제대상세액 11,320,754원 = 한도액 200,000,000원 × 공제율 6/106

D. 공제(납부)할 세액 5,320,754원 = 11,320,754원 - 예정신고분 이미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6,000,000원

작성화면

조회기간 2022 년 10 월 ~ 2022 년 12 월 2기 확정 관리용 = 신고용

관리용 신고용

공급자	사업자/주민등록번호
(주)세미	211-81-87421
(주)진우	212-81-30450

취득일자	구분	물품명	수량	매입가액	공제율	의제매입세액	건수
2022-10-31	계산서	야채	1	30,000,000	6/106	1,698,113	1

조회기간 2022 년 10 월 ~ 2022 년 12 월 2기 확정 관리용 = 신고용

관리용 신고용

공급자	사업자/주민등록번호
(주)세미	211-81-87421
(주)진우	212-81-30450

취득일자	구분	물품명	수량	매입가액	공제율	의제매입세액	건수
2022-11-24	신용카드등	쟁육	1	80,000,000	6/106	4,528,301	1
합계			1	80,000,000		4,528,301	1

	매입가액 계	의제매입세액 계	건수 계
계산서 합계	30,000,000	1,698,113	1
신용카드등 합계	80,000,000	4,528,301	1
농·어민등 합계			
총계	110,000,000	6,226,414	2

<의제매입세액 정산명세>

면세농산물등 | 제조업 면세농산물등
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등 불러오기

과세표준			대상액 한도계산		B.당기매입액	공제대상금액 [MIN (A,B)]
합계	예정분	확정분	한도율	A.한도액		
500,000,000	242,000,000	258,000,000	40/100	200,000,000	216,000,000	200,000,000
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
공제대상세액		이미 공제받은 금액			공제(납부)할세액 (C-D)
공제율	C.공제대상금액	D.합계	예정신고분	월별조기분	
6/106	11,320,754	6,000,000	6,000,000		5,320,754

수정 후

작성방법

- 음식업을 하는 법인 공제율은 6/106 적용한다.
- 농민으로부터의 매입은 제조업자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므로 음식업인 해당 사업자는 농어민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.

<의제매입세액 정산명세>

A. 한도액 250,000,000원 = 1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500,000,000원 × 한도율 50%

B. 당기매입액 216,000,000원 = 1기 예정 106,000,000원 + 1기 확정 110,000,000원

공제대상금액 216,000,000원 = MIN(한도액 250,000,000, 당기매입액 216,000,000)

C. 공제대상세액 12,226,415원 = 한도액 216,000,000원 × 공제율 6/106

D. 공제(납부)할 세액 6,226,415원 = 12,226,415원 -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6,000,000원

작성화면

조회기간 2022 년 10 월 ~ 2022 년 12 월 2기 확정 관리용 = 신고용

관리용 신고용

공급자	사업자/주민등록번호
(주)세미	211-81-87421
(주)진우	212-81-30450

취득일자	구분	물품명	수량	매입가액	공제율	의제매입세액	건수
2022-10-31	계산서	야채	1	30,000,000	6/106	1,698,113	1

조회기간 2022 년 10 월 ~ 2022 년 12 월 2기 확정 관리용 = 신고용

관리용 신고용

공급자	사업자/주민등록번호
(주)세미	211-81-87421
(주)진우	212-81-30450

취득일자	구분	물품명	수량	매입가액	공제율	의제매입세액	건수
2022-11-24	신용카드등	쟁육	1	80,000,000	6/106	4,528,301	1
합계			1	80,000,000		4,528,301	1

	매입가액 계	의제매입세액 계	건수 계
계산서 합계	30,000,000	1,698,113	1
신용카드등 합계	80,000,000	4,528,301	1
농·어민등 합계			
총계	110,000,000	6,226,414	2

<의제매입세액 정산명세>

면세농산물등 | 제조업 면세농산물등
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등 불러오기

과세표준			대상액 한도계산		B.당기매입액	공제대상금액 [MIN (A,B)]
합계	예정분	확정분	한도율	A.한도액		
500,000,000	242,000,000	258,000,000	50/100	250,000,000	216,000,000	216,000,000
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
공제대상세액		이미 공제받은 금액			공제(납부)할세액 (C-D)
공제율	C.공제대상금액	D.합계	예정신고분	월별조기분	
6/106	12,226,415	6,000,000	6,000,000		6,226,415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수정사유	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		

정답 및 해설 65p 16번 작성화면 — 해설

수정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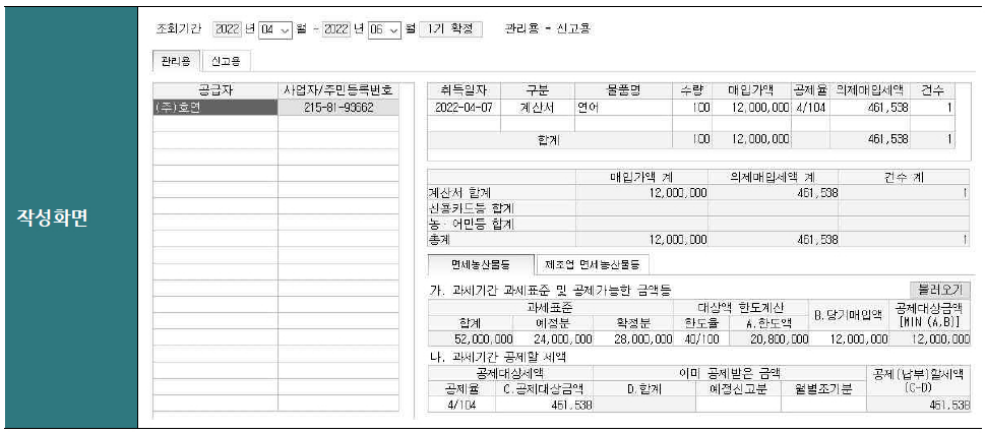

수정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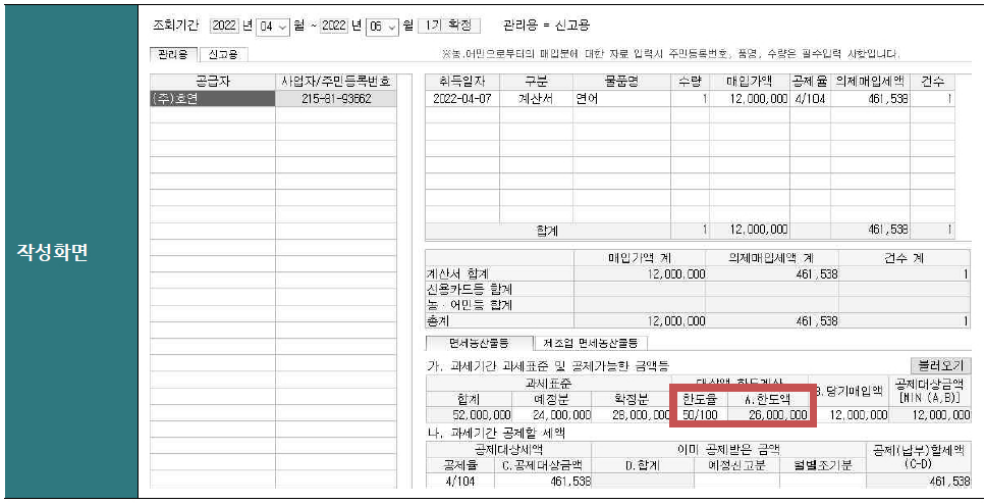

수정사유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

124p 문제 09 표 — 문제-표

수정 전

구 분	퇴직급여추계액	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
생산직	500,000,000원	5,000,000원
영업직	200,000,000원	6,000,000원

수정 후

구 분	퇴직급여추계액	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
생산직	500,000,000원	5,000,000원
영업직	200,000,000원	16,000,000원

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 colspan="2"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236p
④
의제매입세액의 계산 - 한도 - 표</td><td rowspan="3">개념,공식-설명</td><td>수정 전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h>사업자</th><th>과세표준 (연간기준)</th><th>음식점업</th><th>이외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개인사업자</td><td>과세표준 2억 이하</td><td>65%</td><td>55%</td></tr>
<tr><td>과세표준 2억 초과 4억 이하</td><td>60%</td><td>55%</td></tr>
<tr><td>과세표준 4억 초과</td><td>50%</td><td>45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법인사업자</td><td colspan="2">40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수정 후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h>사업자</th><th>과세표준 (연간기준)</th><th>음식점업</th><th>이외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개인사업자</td><td>과세표준 2억 이하</td><td>75%</td><td>65%</td></tr>
<tr><td>과세표준 2억 초과 4억 이하</td><td>70%</td><td>65%</td></tr>
<tr><td>과세표준 4억 초과</td><td>60%</td><td>55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법인사업자</td><td colspan="2">50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수정사유</td><td colspan="2">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445p
6월 25일 분개</td><td rowspan="2">해설</td><td>수정 전</td><td colspan="2">6월 25일
(차) 외화장기차입금 [공상은행] 214,000,000 (대) 보통예금 226,600,000
이자비용 6,600,000
외환차손 6,000,000</td></tr>
<tr><td>수정 후</td><td colspan="2">6월 25일
(차) 외화장기차입금 [경도은행] 214,000,000 (대) 보통예금 226,600,000
이자비용 6,600,000
외환차손 6,000,0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488p
4월 9일 표</td><td rowspan="2">문제-그림</td><td>수정 전</td><td colspan="2">품목 등
간주공급의 과세표준(공급가액)은 시가이다.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88,000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안분 계산된다.
<table>
<tr><th>일</th><th>번호</th><th>유형</th><th>품목</th><th>수량</th><th>단가</th><th>공급가액</th><th>부가세</th><th>합계</th></tr>
<tr><td>9</td><td></td><td>건별</td><td>거래처선물</td><td></td><td></td><td>88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Enter↵
<table>
<tr><th>일</th><th>번호</th><th>유형</th><th>품목</th><th>수량</th><th>단가</th><th>공급가액</th><th>부가세</th><th>합계</th></tr>
<tr><td>8</td><td>50013</td><td>건별</td><td>제품</td><td></td><td></td><td>600,000</td><td>60,000</td><td>660,00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수정 후</td><td colspan="2">품목 등
간주공급의 과세표준(공급가액)은 시가이다.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88,000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안분 계산된다.
<table>
<tr><th>일</th><th>번호</th><th>유형</th><th>품목</th><th>수량</th><th>단가</th><th>공급가액</th><th>부가세</th><th>합계</th></tr>
<tr><td>9</td><td></td><td>건별</td><td>거래처선물</td><td></td><td></td><td>88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Enter↵
<table>
<tr><th>일</th><th>번호</th><th>유형</th><th>품목</th><th>수량</th><th>단가</th><th>공급가액</th><th>부가세</th><th>합계</th></tr>
<tr><td>9</td><td>50003</td><td>건별</td><td>거래처선물</td><td></td><td></td><td>80,000</td><td>8,000</td><td>88,00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513p 상단 그림 내부	문제-본문	**수정 전**	
		수정 후	

수정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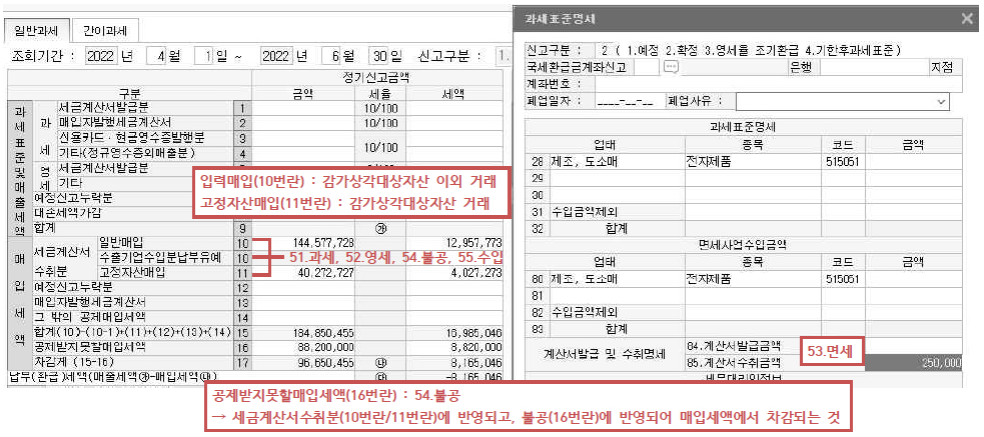

수정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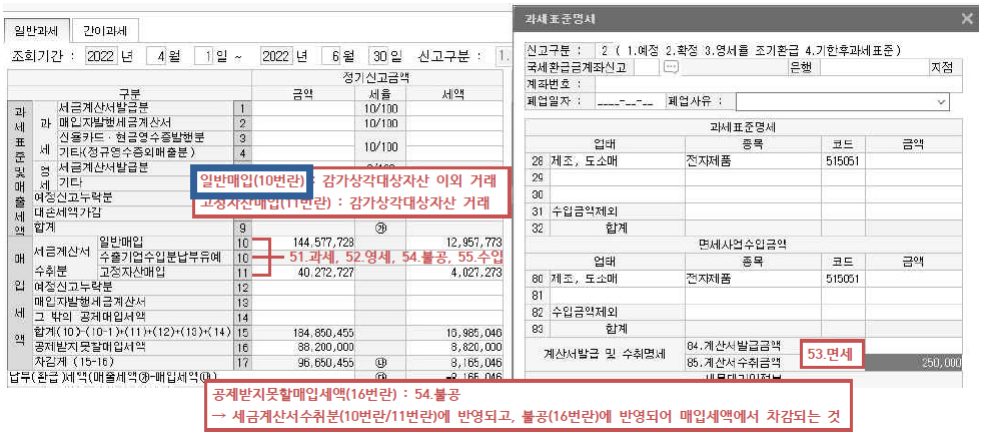

555p 6. 의제매입세액 - 표	개념,공식-설명	**수정 전**	

수정 전

사업자	과세표준 (연간기준)	음식점업	이 외
개인사업자	과세표준 2억 이하	과세표준 × 65%	과세표준 × 55%
	과세표준 2억 초과 4억 이하	과세표준 × 60%	과세표준 × 55%
	과세표준 4억 초과	과세표준 × 50%	과세표준 × 45%
법인사업자		과세표준 × 40%	

수정 후

사업자	과세표준 (연간기준)	음식점업	이외
개인사업자	과세표준 2억 이하	과세표준 × 75%	과세표준 × 65%
	과세표준 2억 초과 4억 이하	과세표준 × 70%	과세표준 × 65%
	과세표준 4억 초과	과세표준 × 60%	과세표준 × 55%
법인사업자		과세표준 × 50%	

수정사유

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

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 colspan="2"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556p
6. 의제매입세액
- 이미지</td><td rowspan="3">개념,공식-설명</td><td>수정 전</td><td colspan="2">[확정신고 정산내역]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우측 하단에 작성
면세농산물등 | 제조업 면세농산물등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등 불러오기
<table><tr><th colspan="3">과세표준</th><th colspan="2">대상액 한도계산</th><th rowspan="2">B.당기매입액</th><th rowspan="2">공제대상금액
[MIN (A,B)]</th></tr><tr><th>합계</th><th>예정분</th><th>확정분</th><th>한도율</th><th>A.한도액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40/100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<table><tr><th colspan="2">공제대상세액</th><th colspan="3">이미 공제받은 금액</th><th rowspan="2">공제(납부)할세액
(C-D)</th></tr><tr><th>공제율</th><th>C.공제대상금액</th><th>D.합계</th><th>예정신고분</th><th>월별조기분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
가. 공제대상금액 : MIN[(과세기간 과세표준 × 한도율 40%), 당기매입액]
나. 공제(납부)할세액 = (공제대상금액 × 공제율) - 이미 공제받은금액(예정신고분)</td></tr>
<tr><td>수정 후</td><td colspan="2">[확정신고 정산내역]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우측 하단에 작성
면세농산물등 | 제조업 면세농산물등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등 불러오기
<table><tr><th colspan="3">과세표준</th><th colspan="2">대상액 한도계산</th><th rowspan="2">B.당기매입액</th><th rowspan="2">공제대상금액
[MIN (A,B)]</th></tr><tr><th>합계</th><th>예정분</th><th>확정분</th><th>한도율</th><th>A.한도액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50/100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<table><tr><th colspan="2">공제대상세액</th><th colspan="3">이미 공제받은 금액</th><th rowspan="2">공제(납부)할세액
(C-D)</th></tr><tr><th>공제율</th><th>C.공제대상금액</th><th>D.합계</th><th>예정신고분</th><th>월별조기분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
가. 공제대상금액 : MIN[(과세기간 과세표준 × 한도율 50%), 당기매입액]
나. 공제(납부)할세액 = (공제대상금액 × 공제율) - 이미 공제받은금액(예정신고분)</td></tr>
<tr><td>수정사유</td><td colspan="2">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</td></tr>
</table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560p 작성방법 및 작성화면	해설		

수정 전

작성방법

- 공제율 : 음식업인 법인이므로 공제율 6/106 적용
- 면세매입액의 한도 136,000,000원 = 340,000,000원(과세표준) × 40%(법인 한도율)
- 1기 공제대상금액 136,000,000원 = 당기매입액 150,400,000원(확정 148,400,000원 + 예정 2,000,000원) 한도초과
- 1기 확정신고 시 공제세액 7,584,906원
  = 136,000,000원(공제대상금액) × 6/106(공제율) - 113,207원(예정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)

작성화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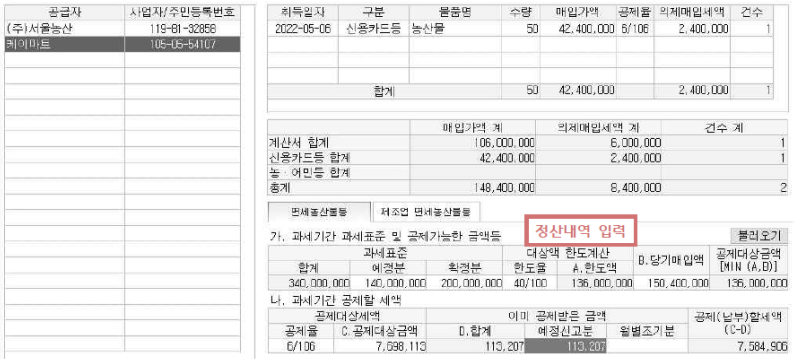

수정 후

작성방법

- 공제율 : 음식업인 법인이므로 공제율 6/106 적용
- 면세매입액의 한도 170,000,000원 = 340,000,000원(과세표준) × 50%(법인 한도율)
- 1기 공제대상금액 = 당기매입액 150,400,000원(확정 148,400,000원 + 예정 2,000,000원)
  → 당기매입액이 면세매입액의 한도 17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공제가능함
- 1기 확정신고 시 공제세액 8,400,000원
  = 150,400,000원(공제대상금액) × 6/106(공제율) - 113,207원(예정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)

작성화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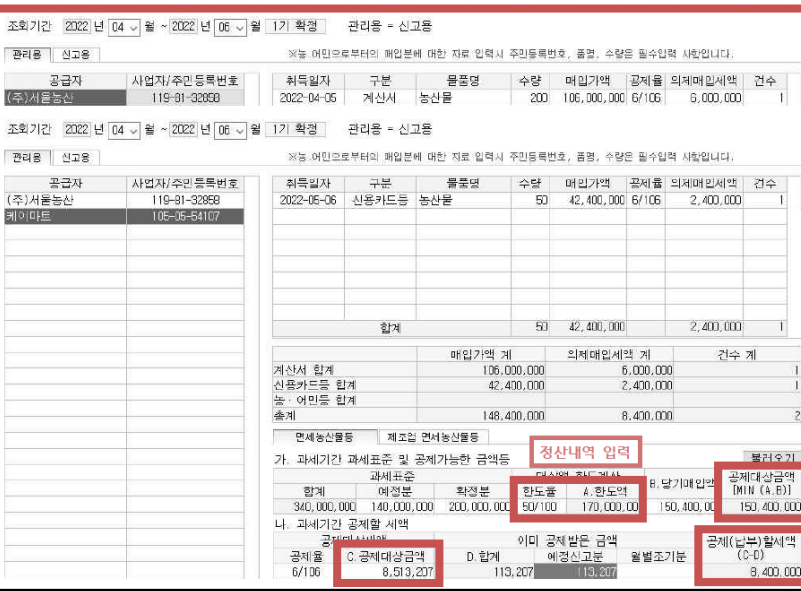

수정사유

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

622p 작성예제	문제-본문	수정 전	작성예제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업부 사원 김본인씨의 사원등록을 하고, 김한국씨의 부양가족을 부양가족명세서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공제여부를 입력하시오.
		수정 후	작성예제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업부 사원 김본인씨의 사원등록을 하고, 부양가족을 부양가족명세서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공제여부를 입력하시오.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
685p
문제 3 - [1] 표

문제-본문

수정 전

상대국	거래처	수출신고번호	선적일	원화 환가일	통 화	수출액	기준환율	
							선적일	원화 환가일
미 국	ABC사	13042-10-044689X	2022.04.06	2022.04.08	USD	$50,000	₩1,150/$	₩1,140/$
미 국	DEF사	13045-10-011470X	2022.05.01	2022.04.30	USD	$60,000	₩1,140/$	₩1,130/$

수정 후

상대국	거래처	수출신고번호	선적일	원화 환가일	통 화	수출액	기준환율	
							선적일	원화 환가일
미 국	ABC사	13042-10-044689X	2022.04.06	2022.04.08	USD	$50,000	₩1,150/$	₩1,140/$
미 국	DEF사	13045-10-011470X	2022.05.01	2022.04.30	USD	$60,000	₩1,140/$	₩1,130/$
중 국	베이징사	13064-25-247041X	2022.06.29	2022.06.30	CNY	700,000위안	₩170/위안	₩171/위안

701p
문제 5 - [2] 표

문제-표

수정 전
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비 고
본 인	최수정	851006-2458322	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며, 한부모에 해당함
본인의 직계존속	윤여선	630122-2184321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
수정 후
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비 고
본 인	최수정	851006-2458322	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며, 한부모에 해당함
본인의 직계존속	윤여선	630122-2184321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본인의 직계비속	최안나	170203-3954210	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

724p
문제 5 - [2] 표

문제-표

수정 전

관 계	성 명	연 령	소 득	비 고
본 인	이남동	37	총급여 3,000만원	세대주
배우자	최연수	36	양도소득금액 120만원	
장 모	김강화	66	기타소득금액 100만원	
동 생	이송도	35	일용근로소득 600만원	장애인(국가유공 상이자)
딸	이 준	9	소득없음	

수정 후

관 계	성 명	연 령	소 득	비 고
본 인	이남동	37	총급여 3,000만원	세대주
배우자	최연수	36	양도소득금액 120만원	
장 모	김강화	66	기타소득금액 100만원	
동 생	이송도	35	일용근로소득 600만원	장애인(국가유공 상이자)
딸	이 준	9	소득없음	
아 들	이미도	6	소득없음	

742p
문제 3 - [1] 표

문제-표

수정 전

상대국	수출신고번호	선적일	환가일	통 화	
				선적일	환가일
일 본	13041-20-044589X	2022.04.06	2022.04.15	JPY	¥300,000
미 국	13055-10-011460X	2022.05.18	2022.05.12	USD	$60,000
영 국	13064-25-147041X	2022.06.30	2022.07.08	GBP	£75,000

수정 후

상대국	수출신고번호	선적일	환가일	통 화	수출액	기준환율	
						선적일	환가일
일 본	13041-20-044589X	2022.04.06	2022.04.15	JPY	¥300,000	₩994/¥100	₩997/¥100
미 국	13055-10-011460X	2022.05.18	2022.05.12	USD	$60,000	₩1,040/$	₩1,080/$
영 국	13064-25-147041X	2022.06.30	2022.07.08	GBP	£75,000	₩1,110/£	₩1,090/£

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 colspan="2"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765p
문제 3 - [1] 표</td><td rowspan="2">문제-표</td><td>수정 전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h>층 수</th><th>호 수</th><th>상 호
(사업자번호)</th><th>면적(㎡)</th><th>용 도</th><th>계약기간</th><th>보증금(원)</th><th>월세(원)</th></tr>
<tr><td>지상
1층</td><td>101</td><td>혼맥잔치
(108-11-96301)</td><td>330</td><td>점 포</td><td>2021.07.01. ~ 2023.06.30</td><td>40,000,000</td><td>2,500,0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상
2층</td><td rowspan="2">201</td><td rowspan="2">㈜정선상회
(108-81-61668)</td><td rowspan="2">330</td><td rowspan="2">사무실</td><td>2020.11.01. ~ 2022.10.31</td><td rowspan="2">20,000,000</td><td rowspan="2">1,800,000</td></tr>
<tr><td>2022.11.01. ~ 2024.10.31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수정 후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h>층 수</th><th>호 수</th><th>상 호
(사업자번호)</th><th>면적(㎡)</th><th>용 도</th><th>계약기간</th><th>보증금(원)</th><th>월세(원)</th></tr>
<tr><td>지상
1층</td><td>101</td><td>혼맥잔치
(108-11-96301)</td><td>330</td><td>점 포</td><td>2021.07.01. ~ 2023.06.30</td><td>40,000,000</td><td>2,500,0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상
2층</td><td rowspan="2">201</td><td rowspan="2">㈜정선상회
(108-81-61668)</td><td rowspan="2">330</td><td rowspan="2">사무실</td><td>2020.11.01. ~ 2022.10.31</td><td>20,000,000</td><td>1,800,000</td></tr>
<tr><td>2022.11.01. ~ 2024.10.31</td><td>20,000,000</td><td>2,000,00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